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국고국에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신설하면서, 이에 필요한 인력 4명(3급 또는 4급 1명, 5급 2명, 6급 1명)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,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국유재산협력과) ① 국유재산협력과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.
별표 4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국유재산협력과(존속기한: 2025년 4월 30일)

총계	4
일반직 계	4
부이사관 또는 서기관	1
행정사무관	2
행정주사	1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27조(국유재산협력과)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</u> <u>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.</u>
<u>제27조 (생략)</u>	<u>제28조 (현행 제27조와 같음)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[별표 4의2]

기획재정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24조제6항, 제25조제2항
및 제26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4. <u>국유재산협력과(존속기한: 2025년 4월 30일)</u>	<u><신 설></u>		
총계		<u>4</u>	+4
일반직 계		<u>4</u>	+4
<u>부이사관 또는 서기관</u>		<u>1</u>	+1
<u>행정사무관</u>		<u>2</u>	+2
<u>행정주사</u>		<u>1</u>	+1